

조문 별 제·개정 이유서

1.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관리 절차 및 관련 서식 신설

(안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가. 개정 이유

- 2022. 6. 16. 시행 예정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8270호, 2021. 6. 15. 공포) 제13조의2 제5항에서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신고,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실적증명서의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실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

나. 개정 내용

- 안 제6조의2 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여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변경)신고, 실적증명서 발급 절차와 관련 서식*에 관한 사항 규정

* 별지 제6호서식 광해방지사업 실적총괄표

별지 제6호의2서식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별지 제6호의3서식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6호의4서식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별지 제6호의5서식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대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관리를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규정 마련

(안 제6조의2 제3항)

가. 개정 이유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관리와 같이 그 서비스의 이용이 법률상 강제되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경우 수수료 징수에 대해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는 없으나, 그 경우에도 가급적 법령에 근거를 두어 이용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징수 근거규정 마련(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나. 개정 내용

- 실적관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관리를 위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관리 관련 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측가능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 신설(안 제9조의2)

가. 개정 이유

- 2022. 6. 16. 시행 예정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8270호, 2021. 6. 15. 공포)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절차와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등 경력증명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경력 관리에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

나. 개정 내용

- 안 제9조의2 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여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변경)신청을 위한 구체적 절차, 관련 서식* 및 구비서류 등의 사항을 규정
 - * 별지 제7호의2서식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
 - 별지 제7호의3서식 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
 - 별지 제7호의4서식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변경신청서
- 안 제9조의2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경력증명서 관련 서식*, 발급신청 및 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 별지 제7호의5서식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 별지 제7호의6서식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별지 제7호의7서식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 관련 수수료 산정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등 (안 제13조)

가. 개정 이유

- 법 제44조제2항에서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수료 관련 세부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수수료 산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나. 개정 내용

-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 수수료의 경우에도 현행 제13조에 따른 수수료 결정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
 - 수수료 금액은 업무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안 제13조제2항 신설)
 - 수수료 결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내용을 게재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 시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개정)
- 법 제44조제2항과 안 제13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문체계상 필요한 개정사항 반영(안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 제13조제1항의 위임근거규정을 “법 제44조”에서 “법 제44조제1항”으로 개정
 - 제13조의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개정
 - 안 제13조 제3항과 제4항에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추가 반영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 관련 수수료 산정 및 결정 절차에 관한 예측 가능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